

●기상청공고 제2024-120호

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 요소별 관측방법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8월 09일

기상청장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진해일 관측방법 및 관측요소를 현행화하고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재설정하려는 것임

2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4년 8월 30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(참조: 지진화산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07062)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,

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

- 전자우편 : kyunghm@korea.kr

- 팩스 : 02-841-7664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(전화: 02-2181-076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(<http://www.kma.go.kr>)의 「주요업무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」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